

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4타경4873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1. 27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남기영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5.01.03. 경매개시결정			배당요구종기	2025. 3. 18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 증 금	차 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김민주		현황조사	조사된 내용없 음 점유자				2022.06.14.			
<p><비고></p> <p>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</p> <p>해당사항없음</p> <p>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</p> <p>해당사항없음</p> <p>비고란</p>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4타경4873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470-4, 470-9

세강유니엘102

[도로명주소]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147-4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지상8층 아파트

1층 계단실, 관리실 26.46㎡

2층 아파트 305.04㎡

3층 아파트 305.04㎡

4층 아파트 301.4㎡

5층 아파트 301.4㎡

6층 아파트 286.28㎡

7층 아파트 252.7㎡

8층 아파트 166.7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6층603호

철근콘크리트조 73.8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470-4

대 420.6㎡

2. 동 소 470-9

대 331.5㎡

대지권의종류 : 1, 2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, 2. 752.1분의 33.42787

감정평가액

155,000,000

회차

기 일

최저매각가격

매수신청보증금

1회

2025.11.24

155,000,000

15,500,000

2회

2025.12.22

108,500,000

10,850,000

3회

2026.01.26

75,950,000

7,595,000

4회

2026.03.09

53,165,000

5,316,500